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기준의 장기적 재검토(3년 의무화)〉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3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수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7.
3. 회부연월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 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이를 3년 주기로 현실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③ (생략)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u>성격 등을 고려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년마다</u> -----.

최근 시행(2025.9.26.)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¹⁾이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금의 가산 등 확대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지원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형평성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전략)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후략)

제22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법 조문의 체계·자구적 수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원금 결정기준 변경 가능성에 따른 재원 건전성 및 하위 법령의 객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0조제1항²⁾에 따라 보상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에 따라 3년 주기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결정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대통령령) 위임 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동 지표를 마련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률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10조제4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를 개정안이 "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의미의 "등"이 누락되었는데, "등"이 삭제될 경우 고려 요소가 법률에 열거된 항목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 기준 변경의 실질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위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아울러, "3년마다"의 기산점(예: 법 시행일 기준 또는 최초 대통령령 제정일 기준 등)이 불명확하므로 부칙 또는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하위법령 위임 근거와 주기적 재검토 의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예컨대 "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와 같이 조문을 명확히 다듬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7